

제9장 규제기관 : 공정거래위원회

I. 전담기구

독점규제법상의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며,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(법 제35조).

II. 조직

1. 구성(법 제37조)

-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.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제청으로, 다른 위원은 위원장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.
- 위원의 자격요건과 신분.
- 형법의 적용에 대한 공무원의제(법제65조의 2)
- 사무처 설치(법 제47조).

2. 위원장(법 제38조)

-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며, 국무회의 출석권과 발언권이 있다. 유고시 부위원장, 선임상임위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3.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

- 위원장, 부위원장,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,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(법제39조).
- 위원은 i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, ii)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(법 제40조).
-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(제41조).

III. 권한

- 소관사무(법 제36조)
- 국제협력에 대한 권한(법 제36조의 2)

IV. 회의

- 공정위의 회의는 전원회의 와 소회의 로 구분(법 제37조의 2)

1. 전원회의

-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-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(법 제42조 제1항).

- 소관사항(법 제37조 3 제1항)

i) 법령이나 규칙·고시 등의 해석적용, ii) 이의신청, iii)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위임한 경우, iv)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·변경, v) 경제적 과급효과가 중대한 사항.

2. 소회의

-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.

- 상임위원이 의사를 주재하며,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법 제 42조 제2항)

3. 심리·의결의 공개와 합의의 비공개(법 제43조)

-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. 다만 당사자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.

- ‘의결의 합의’는 공개하지 않는다.

4. 심판정의 질서유지(법 제43조의 2)

- 각 회의 의장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(제69조 2 제2항)

5.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(법 제44조)

- 제척사유(제1항 각호)

- 기피사유: ‘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’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.(제2항)

- 회피사유: 위원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(제3항). 위원장 허가대상.

6. 의결은 이유를 명시한 ‘의결서’로 하여야 하며, 의결에 참가한 위원은 의결서에 ‘서명날인’하여야 한다.(법 제45조)

7. 운영규칙제정 권한(법 제48조의 2)

8. 비밀엄수 의무(법 제62조)

-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법 제69조 제2항)

* 한국공정거래조정원(법 제48조의 2) : 불공정거래행위와 가맹사업관련 분쟁의 처리

->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(법 제48조의 3)